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5,074,956	15,152,249
일반회계	476,345,760	14,290,373
특별회계	28,729,196	861,876
기타특별회계	28,729,196	861,876
상수도특별회계	16,435,535	493,066
자활기금특별회계	172,479	5,1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2,293	27,969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3,976,095	119,283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45,909	4,37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925,885	87,777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141,000	124,2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13,74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5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